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975

발의연월일: 2025. 3. 17.

발 의 자:문대림・임호선・주철현

이원택 • 윤준병 • 박용갑

송옥주 · 임오경 · 신정훈

김영호 · 허종식 · 서삼석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협동조합 등 일정한 조합법인의 법인세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업무추진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에서 일정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절차를 생략하고, 비교적 저율의 법인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조합법인의 공익성을 고려하면, 조합법인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과세특례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5년 12 월 31일까지 10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1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5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
세 과세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세 과세특례) 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	
인세는 <u>2025년 12월 31일</u> 이전	<u>2035년 12월 31일</u>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	
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	
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	
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	
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	
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	
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기업업무추	
진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	
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	
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	
한 금액에 100분의 9[해당금액	
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 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 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 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 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 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 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 ⑥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